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2. 8. 29(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안번호	제 244 호
의결년월일	2012. 8.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12년 8월 29일
 - 라. 의결일자 : 2012년 8월 29일
-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 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공직자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방법, 절차 및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복 행위 금지 등 부조리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방법(안 제5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보호(안 제6~9조)
-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10~13조)
- 보상금 지급 기준, 한도 및 지급 방법(안 제14~1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숙형)

-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14조 제1항에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제15조에서 보상금 신청을 신고자의 임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제16조 제1항에서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안의 취지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자가 임의의 방법으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보상금 지급 결정에 혼선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 245 호
의결년월일	2012. 8.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3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8월 29일
라. 의결일자 : 2012년 8월 29일
-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가. 제정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5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세종교육의 교육시책 구현이나 교육발전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매년 12월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함(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안 제3조)
-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부문,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민간인 부문 각 부문별 1명 내외 (총 4명 내외) (안 5조)
- 상패 및 부상을 수여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안 7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숙형)

- 본 조례안은 세종교육 시책을 구현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유공자를 격려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종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의안번호	제 246 호
의결년월일	2012. 8.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12년 8월 29일
- 라. 의결일자 : 2012년 8월 29일
 -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가. 제정 이유

- 2012. 1. 26일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제16조에서 시·도 교육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3년 이후 세종시 학교체육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개선 및 학교운동부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학생·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사항
-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 학교체육 육성관련 연계 협조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9인 이내
 - 임기 : 2년
 - 회의 : 매년 2회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숙형)

-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세종시 학교체육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 3조제 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19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 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 제3조제 2항 중에서 당연직 위원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6조제 4항 중에서 '간사는'은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가 필요함
- 제9조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8조의 조사 연구 의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동의 위원 : 김학현 위원

나.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 구성 인원이 과다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내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 필요
-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회의 안건을 간사가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사는' 삭제 필요

다. 주요골자

-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1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
- 조례안 제3조 제3항은,
'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수정
- 조례안 제3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체육분야 민간 전문가로서'를 '위원장은'으로 수정
-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간사는 회의 안건을'을, '회의안건은'으로 수정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번 안 호	제 24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 8. 29. (제 246 호)

제안년월일 : 2012. 8. 29.

제 안 자 : 교육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위원회 구성 인원이 과다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내용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 필요
-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회의 안건을 간사가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사는'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1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 조례안 제3조 제3항은, '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 조례안 제3조 제4항 내용 중 '위원장은 체육분야 민간 전문가로서'를 '위원장은'으로
- 조례안 제6조 제4항 중, '간사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가 필요하여 '간사는 회의 안건을'을, '회의안건은'으로 수정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안 제6조(회의)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u>19인</u>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체육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 ----- <u>11인</u> 이내의 ----- ----- -----</p> <p>③ 위원 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생활체육·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p>
<p>제6조(회의) ④ <u>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6조(회의) ④ <u>회의 안건은 ----- ----- ----- -----</u></p>

의안번호	제 247 호
의결년월일	2012. 8. 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12년 8월 29일
- 라. 의결일자 : 2012년 8월 29일
 -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 개정 이유

- 포상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2012년도 정
 부포상업무지침의 의무적 사항을 반영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
 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위원 구성 명시
 - 제11조제2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숙형)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포상적격자 선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의무적 사항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 248 호
의결년월일	2012. 8. 2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3일
- 다. 상정일자 : 2012년 8월 29일
- 라. 의결일자 : 2012년 8월 29일
 - 제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상정,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 개정 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2.9.1자 개교하는 학교를 삽입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학교명칭과 위치를 표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명칭 : 유치원 1, 초등학교 1
 - 한솔유치원, 한솔초등학교

○ 위치

- 한솔유치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누리로 32
- 한솔초등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누리로 3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숙형)

○ 본 개정 조례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 2에 의거 2012.6.30일까지 학교설립 등의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2011.12.7.일 고시한 한솔유치원과 한솔초등학교에 대한 학교명과 위치를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4. 질의 ·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